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0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조경태·홍문표·박성중

윤한홍 · 김영식 · 김상훈

추경호 • 이종배 • 정동만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할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의 경우의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륜·경정의 공정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문구를 삭제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법률 제 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선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제1조(목적)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	
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	
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u>선용</u>
<u>육성</u>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	
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	
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